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##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오영탁 의원 등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9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‘공공기관’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
다.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라.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마.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참석의무와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## 5. 검토내용

###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소속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공공기관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음.
  - 안 제2조는 ‘공공기관’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  - 안 제3조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·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.
  -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·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5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이 참석하도록 규정하였음.
  -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.
- 입법예고('19. 11. 12.~'19. 11. 1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소속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